

## 副區廳長 指示事項(第17號)

- 2016. 5. 10.(화) 과·동장회의 -

훈시-24	'김영란법'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청렴도 향상 추진철저	전 부 서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- 어제(5월9일) '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.' 등의 내용을 담은 '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' (김영란법)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으며, 이르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- 전직원은 시행초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취지와 지침을 숙지하고, 간부 들은 솔선수범하여 부패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람.

(※김영란법 : 공무원이 직무 관련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)

- 부구청장 명에 의하여 기 획 재 정 국 장 -